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창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62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9.

발 의 자:윤창현・유경준・구자근

정우택 · 정찬민 · 임이자

배준영 • 박대수 • 장동혁

김용판 · 이양수 · 이채익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 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보증하는 상품으로,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 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의 비중은 약 78% 수준으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, 그 중 추가 소득이 필요한 인구 비중이 91% 수준으로 매우 높음.

게다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은 2022년 기준 75만 7,813가구로, 2021년 52만 3983가구 대비 4 5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노년층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, 노년층 자산 중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,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. 또한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(안 제43조의11).

법률 제 호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(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)이 9억원을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11(주택담보노후연금보	제43조의11(주택담보노후연금보
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) ①	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) ①
제2조제8호의2·제9조제4항·	
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	
의5·제43조의7 및 제43조의8	
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	
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<u>「부</u>	<u>대통령령으로</u>
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	<u>정하는 가격을</u>
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	
가격(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	
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	
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	
<u>을 말한다)이 9억원을</u> 초과하	
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	
등을 포함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